

[서식 예] 내용증명(채권양도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

내 용 증 명

시행일자: 2018. . . ㅇㅇㅇ

수 신: 김〇〇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

발 신: ⟨◇◇종합건설주식회사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

제 목: 채권양도 통지

1. 통지인(임차인)의 수신인(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존재

통지인은 수신인에 대하여 ○○시 ○○구 ○○로 ○○아파트 ○○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통지인(임차인)은 채권양수인 홍○○에게 1억 8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통지인과 양수인은 20○○. ○. ○○.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통지인(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 통지권한 수여

양도인은 채권양도통지를 위하여, 양수인 홍○○에게 양도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권한을 수여하였습니다.

첨 부 서 류



- 1. 채권양도 통지권한에 대한 위임장
-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 사본

2000. 0. 0.

위 김〇〇 (서명 또는 날인)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 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